의안번호	2204868
의 뢰 인	김주영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12.
추계번호	24E451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–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할 경우 소득세수는 2031~2032년 2년간 123억원(연평균 6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31	2032	누적	연평균
개정안에 따른 조세특례일몰 연장 (안 제29조의6)	-61	-62	-123	-62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29조의6 (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)	○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-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5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의 공제금 수령액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* * 청년 근로자: 중소기업 90%, 중견기업 50% 청년 외 근로자: 중소기업 50%, 중견기업 30% - 적용기한: (현행) '24.12.31. → (개정안) '26.12.31.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29조의6 (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5년이 지나면 공제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, 공제금액 수령시기와 소득세 감면시기에 1년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제도시행 6년차부터 세액감면액 발생

○ 안 제29조의6에 따라 2025년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·중견기업의 청년 근로자 등은 만기 공제금을 2030년에 수령하고, 해당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이 시행되는 2031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
❑ 현행 적용기한은 2024년까지이므로, 적용기한 5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31~2032년 동안 발생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감면 실적

❑ (제도 설명)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은 내일채움공제와,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구분

○ 현행 성과보상기금에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(중견)기업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, 공제금 수령액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, 소득세에 일정 비율 만큼 세액을 감면

- 청년 근로자에 대한 감면율: 중소기업 90%, 중견기업 50%
- 청년 외 근로자에 대한 감면율: 중소기업 50%, 중견기업 30%

○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5년이 지나면 공제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, 공제액 수령시기와 소득세 감면시기에 1년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제도시행 6년차부터 세액감면액 발생

- 내일채움공제(5년 만기)는 2014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부터 공제사업 만기 수령자가 발생하며, 만기 공제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20년부터 발생

-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(5년 만기)는 2018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3년부터 만기 공제금 수령자가 발생하며, 만기 공제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24년부터 발생
-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(3년 만기)는 2021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4년부터 만기 공제금 수령자가 발생하며, 만기 공제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25년부터 발생

[표 2]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 현황

구분	내일채움공제	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	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
가입대상	중소(중견)기업 핵심인력	중소(중견)기업 청년근로자	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근로자
가입기간	5년		3년
적립금액	5년간 2,000만원 이상 (핵심인력 720 + 기업 1,500)	5년간 3,000만원 이상 (청년 720 + 기업 1,200 + 정부 1,080)	3년간 1,008만원 (근로자 504 + 기업 504)
우대혜택	만기 공제금 중 기업 기여금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[1]		
시행일	2014.8.21.	2018.6.1.	2021.10.18.
사업기간	계속사업	~2022년(한시 사업)	계속사업
주관부처	중소벤처기업부		중기부+고용부

주: 1) 청년내일채움공제(2년형, 3년형)에 가입하여 만기를 채운 후,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에 가입(가입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예치해야 함)하여 만기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 감면 적용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

❑ (감면실적) 성과보상기금의 공제금을 수령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실적은 2023년 기준 38억원, 2024년은 157억원으로 전망됨

○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따른 소득세 감면은 2020년 처음 발생하고, 2024년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따른 소득세 감면이 발생함에 따라 2024년 조세지출 실적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확대

○ 2024년 전망치는 2024년(2023년 귀속) 연말정산 신고실적 등이 반영된 잠정치

[표 3]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1년 (실적)	2022년 (실적)	2023년 (실적)	2024년[1] (전망)
소득세	29	31	38	157

자료: 대한민국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 각 연도

(2) 추계 방법

❑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예산서 상의 조세지출 실적과 공제사업별 가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추계

○ 개정안에 따라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(5년 만기)에 2025년 가입 시, 만기 공제금 수령자는 2030년부터 발생, 소득세 감면은 2031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

○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추계대상에서 제외

-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22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28년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발생하지 않음
-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(3년 만기)는 2024년 만기 공제금 수령자가 발생하여, 만기 공제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25년부터 발생할 예정
- 다만,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 수(2021~2023년 연평균 583명)가 적고, 기존 공제사업들의 가입자 수 대비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 비율*을 고려할 때 동 사업에 따른 소득세 감면액이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계 대상에서 제외

  *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 비율(2023년 기준: 내일채움공제 39.3%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37.0%

○ 따라서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내일채움공제 사업만을 대상으로 추계

- 2024년 조세지출 실적을 활용하되 동 실적에는 내일채움공제뿐만 아니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조세지출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, 사업별 조세지출액을 구분할 필요
- 사업별로 조세지출액이 구분되어 집계되지 않으므로, 사업별 가입 현황을 바탕으로 추정

(3) 추계 결과

❑ 2024년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따른 조세지출액 실적(157억원) 중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조세지출액은 약 57억원으로 추정

○ 2023년의 조세지출액 실적은 대부분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조세지출액이므로, 2023년 조세지출액에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 증가율(2022년 대비 2023년 증가율)을 적용하여 2024년도 조세지출액 추정

-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에 비례하여 조세지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, 2023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(4,656명)는 2022년(3,089명) 대비 1.5배 규모로 증가

  * 57억원(2024년) = 38억원(2023년) × 1.5

- 2023년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 감면은 2023년 귀속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행되는 2024년에 이루어짐

[표 4] 내일채움공제 가입 현황

(단위: 명, 억원)

가입 연도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
가입자 수	9,619	11,841	8,856	10,929	11,598	12,152	12,422
만기 공제금 수령 연도 (가입연도 +5년)	2022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
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	3,089	4,656	-	-	-	-	-
소득세 감면 연도 (만기 공제금 수령 연도 +1년)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소득세 감면액	38	57[1]	-	-	-	-	-

주: 1) 만기 공제금 수령자를 증가율을 바탕으로 계산한 추정치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❑ 향후에도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에 비례하여 조세지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

○ 먼저 일몰 연장에 따른 2025~2026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수를 추정하고, 최근 연도 가입자 수 대비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 비율을 적용하여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 추정

- 2025~2026년 가입자 수는 2023년 가입자 수에 최근 5년(2018년~2023년) 가입자 수 연평균 증가율(0.96%)을 적용하여 추정

-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는 2025~2029년 가입자 수(추정치)에 가장 최근 연도 가

입자 수 대비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 비율(2023년 0.393=4,656명/11,841명, [표 4] 참조) 적용하여 추정

-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에 비례하여 조세지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할 경우 2031~2032년 연간 소득세 감면액은 61~62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

[표 5]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 및 소득세 감면액 추정

(단위: 명, 억원)

가입 연도	2025	2026
가입자 수	12,662	12,784
만기 공제금 수령 연도 (가입연도 +5년)	2030	2031
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	4,979	5,027
소득세 감면 연도 (만기 공제금 수령 연도 +1년)	2031	2032
소득세 감면액	61	62

❑ 개정안에 따라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할 경우 소득세수는 2031~2032년 2년간 123억원(연평균 6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31	2032	누적	연평균
개정안에 따른 조세특례일몰 연장 (안 제29조의6)	−61	−62	−123	−62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성은	박연서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성은	02-6788-4668	ixsepark@assembly.go.kr